

도시가계조사지침

1976

— 목 차 —

1. 일반적인 사항	3
가. 가계조사란 어떠한 것인가?	3
나. 조사대상은 무엇인가?	3
다. 조사사항은 무엇인가?	5
라. 조사는 언제 어떻게 하는가?	7
2. 조사표 기입요령	9
가. 조사표(가계부)의 기입지도	9
나. 조사표(가계부)의 기입 내용검토 및 회수	10
다. 조사표(가계부)의 기입요령	10
1) 표지각란의 기입	10
2) 가구실태의 기입	11
3) 일일가계수지란의 기입	12
4) 조사표 제출	15
부 록	17
1. 가계 수지항목분류	17
2. 직업분류표	19

1. 일반적인 사항

가. 가계조사란 어떠한 것인가?

가계조사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35개 도시중 성남시, 안양시 및 부천시를 제외한 32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이중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17개 도시에서 약 1,600가구를 추출) 일정한 기간동안 이들 표본가구에서 얻은 수입이 어떠한 곳에 얼마나 지출되었나 하는 것을 파악하므로써 그 지출방식이 소득, 가구인원 및 지역별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가계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실태를 명백히하고 아울러 경제정책이나 사회복지 수립에 필요한 자료 즉 .

첫째 ;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자료

둘째 ; 소비수준 및 표준생계비에 관한 자료

셋째 ; 국민소득의 추계 자료

넷째 ; 임금기준의 결정 및 명양분석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조사대상은 무엇인가?

1) 조사단위

가계조사의 조사단위는 원칙적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나 조사대상으로 적합하지 못한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적격가구

가) 농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로서

- 1) 논, 밭등의 총평수 300평이상을 직접 경작하는 가구
- 2) 소, 말 1마리(운반용 제외)돼지, 양 3마리, 토끼 40마리 닭, 오리 30수 또는 양봉5통 이상을 사육하는 가구
- 3) 누에알 12g이상을 치는 가구
- 4) 특수작물 100평이상을 경작하는 가구를 농가라 한다.

나) 어업가구

어업에 종사하므로써 가계를 유지하는 가구 단, 민물고기를 기르므로 유지하는 가구도 이에 포함된다.

다) 단독가구

1인이 가계를 독립하여 유지하는 가구

라)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 (1) 음식점, 여관, 하숙업등을 경영하여 영업수지와 가계수지를 분리하기 곤란한 가구
- (2) 가족의 일부 또는 전원이 부정기적으로 출타하여 일정한 가계를 이루지 못하는 가구
- (3) 동굴, 천막등에 거주하는 가구

마) 월간 소득액이 35만원 이상되는 고소득가구

바) 외국인 가구

3) 가구의 정의

본조사에서 가구라함은 거주와 가계를 같이 하는 경제적 가족 단위를 말하는 것이며 한사람이라도 별도로 점유하고 있고 독립적인 가계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가구로 한다.

그리고 함께 기식(가계를 위하여 고용한)하는 식모, 침모 등은 가구원으로 간주하나 중업상의 점원, 전속인등의 고용원은 가구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조사대상가구의 구분

조사대상가구를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이외의 가구로 크게 나눈다.

(1) 근로자 가구는 가구주가 국가기관, 지방공공단체 기타 공사립의 단체(학교, 병원등) 및 회사등에 고용되어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그 보수로서 봉급 또는 노임을 받으므로써 가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

(2) 근로자 이외의 가구는 위의 근로자 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말한다. 여기서 가구주라 함은 호적상의 가구주와는 관계없이 가족중 소득이 가장 많은 가구원으로서 사실상 가계의 책임자를 말하며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그 가구의 직업을 분류한다.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득이 가장 많은 직업을 가구주의 직업으로 한다.

다. 조사사항은 무엇인가?

본조사에서 조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가) 수입

(1) 소득

가) 근로소득

나) 기타소득

(2) 기타수입 (저축에 관한 사항)

가) 자산의 감소

나) 부채의 증가

(3) 전기이월금

나) 지출

(1) 소비지출

가) 식료품비

나) 주거비

다) 광열비

라) 피복비

마) 잡비

(2) 비소비지출

가) 조세 및 공과금

나) 지불이자

다) 기타

(3) 기타지출 (저축에 관한 사항)

가) 자산의 증가

나) 부채의 감소

(4) 기말현금잔고

2) 가계의 저축에 관한 사항

3) 가구원 및 주거에 관한 사항

4) 가구구성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

5) 집세에 관한 사항

※ 조사가구를 근로자가구와 근로자 이외의 가구로 분류하여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근로자 이외의 가구

에 대해서는 지출만을 조사한다. 가계수지에 관한 조사사항은 I, L, O의 품목분류방법을 기초로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분류하였다.

(〈부록 1〉 가계조사 수지항목 분류참조)

라. 조사는 언제 어떻게 하는가?

이 조사는 월별로 매월 초하루부터 말일까지 가계부 기장방식을 적용하여 조사한다.

2. 조사표 (가계부) 기입 요령

조사표(가계부)는 「표지」「가구설치」「기입예시」 및 「일일가계수지 기입란」과 「주요품목소비 및 재고량조사」란으로 구성되었다.

더욱이 「일일가계수지란」은 수입 또는 지출을 함께 기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특히 지출과 현물수입은 수량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가. 조사표 (가계부) 의 기입지도

- 1) 조사표(가계부)는 반드시 조사개시전에 조사가구에 배부하여 기입을 의뢰하여야 한다.
- 2) 표지의 각란은 조사표(가계부)를 배부할때 조사원이 일괄하며 기입하여야 한다.
단, 가구인원수와 취업인원수란은 월말에 조사표(가계부)를 수집할때 조사가구에 문의하여 기입한다.
- 3) 조사표(가계부)에는 조사가구의 가구주성명이나 또는 다른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 4) 조사표(가계부) 배부시에는 기입기간을 조사가구에 알리고 기입요령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한다.
- 5) 기입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수시 가구를 방문하여 기입을 지도하여야 한다.
- 6) 주요품목 소비 및 재고량조사에 있어서 조사개시전 재고량은 조사표(가계부)배부시에 나머지는 조사표(가계부)

회수시에 기입한다.

나. 조사표(가계부)의 기입내용 검토 및 회수

지정된 조사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그 다음날에 조사표(가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 1) 조사표(가계부)의 회수가 늦어지면 분실의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기억의 소멸을 기입 누락사항에 대한 보충조사가 어렵게 되므로 기입기간이 끝나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2) 조사원은 조사표(가계부)를 회수할때 조사가구에서 기입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내용검토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기입기간의 상이여부와 일자의 기입여부
- 나) 품목표시의 명확성
- 다) 현물 또는 자가생산물의 평가
- 라) 수량 및 단위의 정확성
- 마) 영업상 또는 사무실에서 쓰기위해 구입한 품목의 포함여부

※ 만약잘못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확인하여 수정 기입한다.

다. 조사표(가계부) 기입요령

- 1) 표지각란의 기입
 - 가) 조사기

이난에는 해당연도의 마지막 두자리수에 대해 월표시 숫자를 붙여서 기입한다. 즉 1월부터 9월까지 숫자는 01, 02.....09 를, 예를들면 1975 년 10 월분 조사표(가계부)일 때는 7510 으로 표시한다.

나) 조사구 번호

지정된 조사구 번호를 기입한다.

다) 가구번호

지정된 가계조사가구 번호를 기입한다.

라) 가구구분

근로자가구는 근,근로자와가구는 외라 기입하고 가구의 구분은 부록의 가계조사 직업분류표를 참조하여 잘못기입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마) 가구원수

조사기간중 가계를 같이한 월평균 가구원수를 기입한다.

바) 취업인원수

조사기간중 월평균 취업 가구원수를 기입한다.

사) 가구주의 연령

만 연령을 기입한다.

2) 가구실태(가계부 1페이지)의 기입

가) 가구주에 관한사항

- ① 성별 ; 남녀의 구별을 해당란에 ○표시한다.
- ② 연령 ; 만 연령을 기입한다.
- ③ 근무처 또는 사업체명(산업) 및 직업 ;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입한다.

④ 가구주의 소득; 가구주의 1개월 소득을 기입한다.

나) 연령 및 성별 가구원수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를 연령 계급별로 해당란에 인원수를 기입한다.

다) 주거에 관한사항

7개 조사항목중 어느하나의 항목에 반드시 ○표시 되어야 하며 ○표시된 항목에는 월세평가액, 또는 월세액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가구원이 모두 직업이 없는 가구는 생계유지 방법을 상세히 설명 기입하여야 한다.

1) 일일가계수지란의 기입

매일날자를 기입하고 그날의 수입, 지출등을 기입하도록 지도한다. 이때에 다음과 같은점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가) 소득이나 지출이 없는날도 1페이지는 사용되어야 하며 날자를 기입하고「없음」이라고 기입하도록 한다.

나) 그날의 수입 또는 지출이 그날의 페이지로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 기입하도록 하며 이때 2페이지에는 앞페이지의 계속 이라는 것을 명시하도록 한다.

다) 각란의 기입요령

① 「전월에서 넘어온 현금」란에는 반드시 전월에 쓰다남은 현금을 첫 페이지(1페이지)에 기입한다.

② 「수입의 종류 및 지출의 품명」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이 들어 왔든지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에 그 각각을 이란에

기입한다. 단, 근로자 이외의 가구에 대해서 현금소득은 기입할 필요가 없으나 저금에서 찾은금액, 부동산 매각 대금과 같은 기타수입은 기입해야 한다.

③ 봉급이나 임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입의 종류 및 지출의 품명란에 다음과 같은것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입한다.

ㄱ. 어떠한 종류의 보수인가? (봉급, 수당, 상여금등)

ㄴ. 누구의 보수인가? (가구주, 장남등)

ㄷ. 몇월분의 보수인가? (9월분, 10월분등)

④ 현금 또는 현물수입란에는 봉급이나 임금을 받은 금액, 수입이 자 및 배당금 받은금액, 방세받은금액, 부업에서 얻은소득, 출장비 중 잔여금, 현물받은 것과 자가생산물을 평가한 금액, 저금에서 찾은금액, 쟁돈잔금액, 부동산(가옥 및 토지)을 매각한 대금, 그리고 남에게 빌려준 돈 받은금액등 가계에 들어온 일체의 현금과 현물(자가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입한다.

단, 여기서 봉급이나 임금은 소득세, 기여금, 보험료등 각종적립금을 공제하기전의 총소득을 기입하여야 하며 이런경우 봉급이나 임금에서 공제한 소득세, 기여금, 보험료, 각종적립금등의 각각을 세분하여 지출로 취급하며 그 금액을 현금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 예 시 >

부 호 기입란	수입종류및지출의품명 (현금및현물)	수 입		지 출		수 단 량 위
		현 금	외상및월부구입	현 금	외상및월부구입	
	가구주 11월분봉급	48,000				
	조정수당	10,000				
	적금		2,397			
	기여금		2,644			
	갑근세		1,885			
	보험불입		2,000			
	구내식당(한식)		1,800			

⑥ 봉급이나 임금을 두곳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어느곳의 수입인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입한다.

< 예 시 >

부 호 기입란	수입의품목및지출의품명	현 금		지 출		수 량	단 위
		현 물수입	현 금	외상및월부구입			
	가구주 11월분봉급	48,080					
	조식수당	10,000					
	적 금		2,397				
	갑 근 세		1,885				
	기 여 금		2,644				
	가구주 야간교교 11월분강사료	30,000					

⑥ 봉급이나 임금의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수입란에 기입하고 수량란도 기입한다.

⑦ 지출란에는 물건을 샀는지 월부 및 외상값을 지불하였는지 하여 가게로부터 현금이 나간 경우에는 「현금」란에 기입하고 물건을 외상 또는 월부로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외상 및 월부구입」란에 그 금액을 기입하고 「지출의 품명」란에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입한다.

ㄱ. 품명(혼합곡(정부미), 식빵 등)

ㄴ. 용도(가족중 누가 썼는가, 손님접대용이었나 그리고 자기가 구 아닌 다른 가구에 증여하였는가? 또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가구원에게 송금하였는가 등)

단, 가족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일용품은 누가 사용하였는가

를 기입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지출의 품명을 기입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품명은 야채, 생선, 의식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입하지 말고 배추, 양파, 고등어, 식빵, 짜장면 등과 같이 각각의 품명을 기입한다. 쌀은 일반미, 정부미(혼합곡)찰쌀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⑧ 방세, 수도료, 전기료, 수업료등 지불은 11월분, 2학기분(또는 2기분)과 같이 명시한다.

⑨ 보험료는 생명보험인가 손해보험인가 알수있도록 상세히 기입한다.

⑩ 회비와 적립금은 그 성질과 목적을 알수있도록 상세히 기입한다. (예 ; 동창회비, 직장공제회비)

⑪ 여행, 등산등에 지출하는 경비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세분하여 기입한다. 예를들면 교통비(지하철, 버스, 기차료) 숙박료, 식사대(구내식당의 도시락, 코카콜라 등)과 입장료 등으로 구별하여 기입한다.

⑫ 의료비는 수술료, 약값등 그 지출의 내용을 알수있도록 상세히 기입한다

⑬ 「수량」란에는 구입한 물건의 수량을 미터(㎞)법에 의하여 기입한다.

⑭ 「월말현금잔고」란에는 월말에 쓰다남은 현금을 끝페이지에 기입하고 이금액은 다시 다음달 가계부기장시「전월에서 넘어온현금」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4) 조사표(가계부)제출

매월말 가계부작성이 끝나면 「합계」「현물종액」 및 「월부 및 외상잔액」을 매 페이지에 합산 기입하고 또한 마지막 페이지의 「자가평

가액」란은 「가구실태」의 「주거」란을 참조하여 기입한후, 가계부
내용상 가계수지에 모순이 없나 재확인한후 각 품목별로 우호불
기입 소정기일내에 통계국에 제출한다.

부록 1. 가계수지항목 분류

1. 요 지

가. 이 가계수지항목의 분류는 국제노동기구 및 국제연합통계기구에
서 추천하는 분류방법을 그 기저로 삼아 품목별 분류에 따라
또 우리나라 국민생활상태에 적합하게끔 분류하였다.

나. 이 가계수지항목의 분류는 현금 및 현물의 수입지출에 공통적
으로 사용된다.

다. 가계의 지출을 구입한 품목에 따라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부비, 잡비의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및 기타 지출로 분류하였
다.

라. 지출항목은 시세의 변화, 수입증감에 따르는 일반 소비성향 등
지출 Weight 의 증감을 참작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였
다.

마. 수지항목 분류중 생활수준 측정을 위하여 집이 자기 소유일
경우에는 이를 인접차가의 방세로 참작하여 수입 자가경가액 항
목을 설정하고 동시에 지출자가경가액 항목도 설정하였다.

2. 가계수지항목해설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소 득	가계소득은 현금소득과 현물소득(가구로부터 이전된것이 아닌 소득)의 총액으로서 원칙적으로 정기적인 경상소득을 말하며 가구주 및 가구원이 근무처에서 받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및 사업소득과 같은 실질적인 소득을 말한다. 단, 비정기적인 소득으로서 퇴직금, 연금인시금과 부권, 경품권 등에 의한 상금은 조사기간동안 실제로 가계지출에 충당된 금액만 이년에 포함한다.
(0100)	근 로 소 득	가구주 및 가구원이 근무처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수입 즉 봉급, 노임, 수당, 상여금, 가불금등을 포함하여 세금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전의 소득을 말한다.
0110	가 구 주 소 득	근로소득중 가구주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0120	기타가구원소득	가구주를 제외한 주부, 자녀 및 기타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0200)	기 타 소 득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으로서 이자 및 배당금 수입, 징세, 땅세 및 권리금 받은 금액,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0210	이 자 및 배 당 금	<p>사업이나 가내부업에 의한 소득, 생활보조 또는 송금액과 공무원, 군인연금 (일시금 제외) 국민복지연금등 사회보장수체금등 근로소득 이외의 경상소득을 말한다.</p> <p>예저금이자, 사채이자, 주식배당금, 공사채이자, 신탁투자에 의한 배당금등이 이란에 기입한다.</p>
0220	집세, 땅세및권리금	<p>타인에게 대여한 가옥 및 토지의 임대료 및 권리금등을 이란에 기입한다.</p>
0230	부 업 소 득	<p>가구주 및 가구원이 자영업이나 가내부업에 종사함으로써 얻은 수입을 말한다. 예를 들면 내재봉소, 편물, 구멍가게, 연초소매업을 경영하여 얻은 수익과 원고료, 번역료, 가정교사료등의 수입을 말한다.</p>
0240	수 증 및 보 조	<p>생활보조를 받은 보조금 또는 정기적으로 받은 송금, 교제, 축의, 조의등에 의하여 받은 현금은 당해조사기간동안 실제로 가계지출에 중단된 금액만이 이에 포함된다.</p>
0250	기 타	<p>상기 이외의 경상수익으로서 사회보장수체금 (일시금 제외), 음성수익 (출장비증잔여금) 등이 이에 포함되며 경상수익이 아닌 상품권, 부권, 경품권, 경마 기타 오락경기에</p>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실 명
		의한 상금 및 습득금, 습득물의 매각대등의 수익 또는 비정기적인 수익인 손해보상금, 퇴직금, 연금일시금등의 경우에는 당해 조사 기간동안 실제로 가계지출에 총당된 금액만이 이난에 포함된다.
	비 용 지 출	조사기간중 지출된 일체의 비용지출로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이 이난에 기입한다.
	소 비 지 출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함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기 위한 지출과 소유 점유 주택의 순임대가 및 무료점유주택의 조임대가 이난에 포함된다.
(1000)	식 료 품 비	
1010	곡 물	
1011	쌀	외미, 현미 포함
1012	잡 쌀	
1013	보 리 쌀	쌀보리, 늘보리 포함
1014	밀	
1015	콩	
1016	팥	
1017	녹 두	
1018	좁 쌀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019	수 수 쌀	
1021	밀 가 루	
1022	기 타 곡물	압맥, 옥수수, 팥콩, 모밀 등 위에 분류되지 않은 곡물류
1100	육 어 개	
1111	쇠 고 기	
1112	돼 지 고 기	
1113	닭 고 기	
1114	기 타 육류	오리, 토끼, 염소, 고래, 비둘기, 개고기, 각종 육류, 내장, 뼈 등 이 밖의 수조육 및 가공비 일체
1115	갈 치	
1116	생 명 태	
1117	조 기	
1118	전 경 이	
1119	교 등 어	
1121	물 오 징 어	
1122	꽂 치	
1123	가 자 미	
1124	병 어	
1125	계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126	굴	
1127	조 개 류	
1128	기타선어개류	해삼, 홍합, 전복, 미꾸라지, 대구, 문어, 잉어, 도미, 민어, 새우등 위에 분류되지 않은 선어개류
1129	복 어	
1131	굴 비	
1132	마 른 멸 치	
1133	마 른 오 징 어	
1134	새 우 젓	
1135	멸 치 젓	
1136	기타전어개류	전대구, 전홍합, 전새우, 전갈치, 조개, 오징어 등 위에 분류되지 않은 전어개류
1200	유 란	
1211	달 갈	
1212	분 유	
1213	연 유	
1214	목 장 우 유	
1215	버 터	
1216	기 타 유 란 유	오리알, 제란가루, 치즈 등 위에 분류되지 않은 유란유 일체

부 호	항 목	내 용	설 명
1300	채 소 및 해 초		
1311	배 추		
1312	양 배 추		
1313	파		
1314	시 금 치		
1315	상 치		
1316	콩 나 물		
1317	기 타	부추, 미나리, 고사리 등 위에 분류되지	
	잎 줄 기 채 소	않은. 잎줄기채소 일체	
1318	부	열무, 종각무 포함	
1319	당 근		
1321	양 파		
1322	도 라 지		
1323	고 구 마		
1324	감 자		
1325	기 타 뿌 리 채 소		
1326	꽃 고 추		
1327	오 이		
1328	호박		
1329	도 마 도		
1331	가 적		
1332	기 타 열 매 채 소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333	김	
1334	미 역	
1335	다 시 마	
1336	기 타 해 초	
1400	과 일	
1411	사 과	
1412	배	
1413	부 승 아	
1414	포 도	
1415	밤	
1416	감	
1417	꽃 감	
1418	딸 감	
1419	바 나 나	
1421	참 외	
1422	수 박	
1423	딸 기	
1424	기 타 과 일	잣, 대추, 살구, 자두 등
1500	조 미 로	
1511	고 추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512	고 추 가 루	
1513	후 추 가 루	
1514	마 늘	
1515	생 강	
1516	깨	
1517	소 금	
1518	잔 장	
1519	고 추 장	
1521	식 초	
1522	설 탕	
1523	구 루 타 민 산	미원, 미풍 등의 화학조미료
1524	소 다	
1525	들 기 림	
1526	참 기 림	
1527	콩 기 림	
1528	낙 화 생 기 림	
1529	마 가 림	
1529	기 타 조 미 료	위에 분류되지 않는 조미료

구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600	가 공 식 품	
1611	국 수	
1612	라 면	
1613	당 면	
1614	생선통조림	
1615	육류통조림	
1616	과일통조림	
1617	두 부	
1618	단 무 지	김치 포함
1619	소 새 지	
1621	기타가공식품	베이콘, 유부, 햄, 가마부구, 색선묵, 튀김 등 위에 분류되지 않은 가공식품
1700	과자및청량음료	
1711	식 빵	
1712	빵	
1713	생 과 자	
1714	비 스 켓	
1715	크 레 카	
1716	기 타 과 자 류	전빵, 섀베이, 카스텔라, 카라멜 등
1717	떡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718	기 타 한 식 과 자	약과, 산자 등
1719	초 콜 냇	
1721	엿	
1722	검	
1723	기 타 설 탕 과 자	
1724	콜 라	
1725	사 이 다	
1726	쥬 스	
1727	커 피	
1728	홍 차	
1729	코 코 아	
1731	아 이 스 크 림	
1732	얼 음	
1733	기 타 청 량 음 료	밀크, 아이스캔디 등 위에 분류되지 않은 청량음료
1800	알 콜 음 료	
1811	칭 주	
1812	약 주	
1813	탁 주	
1814	소 주	
1815	맥 주	병맥주, 캔맥주 포함
1816	포 도 주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1817	위 스 키	
1818	기 타	백알, 고량주, 맥실주, 과일주 포함
1900	외 식	
1911	곰 탕	
1912	냉 면	
1913	비빔 밥	
1914	기 타 한 식	위에 분류되지 않은 한식 일체
1915	짜 장 면	
1916	우 동	
1917	기 타 중국 식	위에 분류되지 않은 중국음식 일체
1918	초 밥	
1919	기 타 왜 식	초밥 이외의 일본요리 일체
1921	양 식	양식 일체
1999	기 타 식료품비	위에 분류기 않은 일체의 식료품비
2000	주 거 비	
2100	방 세	
2200	자가평가액	자가, 전세 및 무상주택의 경우 이를 인정 차가의 지불월세를 참작하여 그 월세를 영 가하는 것으로 총평가액중에서 재산세, 화재 보험료의 지급 및 가옥수리비용은 제외되어야

부 호	항 목 별	용 용 실 명
		한다. 그리고 가옥의 일부를 남에게 빌려 준 경우나 사무실,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 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제외시켜 가계물 위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병가한다.
2300	수 도 료	우물 사용료 포함
2400	주 택 수 리	
2411	목 재	
2412	합 판	
2413	유 리	
2414	시 멘 트	
2415	벽 돌	시멘벽돌 포함
2416	부 록 크	
2417	기 와	
2418	합 석	
2419	스 페 이 트	
2421	케 인 트	니스, 락카 포함
2422	한 지	
2423	비 널 장 판	
2424	주 택 수 리 임	
2425	기 타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실 명
2500	가 구 및 집 기	
2511	양 부 장	카비넷트 포함
2512	찬 장	
2513	거 울	
2514	밥 상	
2515	책 상	테이블 포함
2516	의 자	
2517	응 접 쉼	
2518	침 대	
2519	탁 상 용 시 계	
2521	벽 시 계	
2522	재 봉 틀	
2523	피 아 노	
2524	석 유 난 토	
2525	연 탄 난 토	
2526	라 디 오	
2527	텔 레 비 존	
2528	전 축	
2529	녹 음 기	
2531	선 풍 기	
2532	냉 장 교	
2533	믹 사	

부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2534	전 화 기	
2535	다 리 미	
2536	곤 로	
2537	전 구	
2538	형 광 등	
2539	기 타 가 구	자전거, 풍금, 전기스탠드, 유모차, 신장 등
2541	양 은 술	
2542	냄 비	
2543	스 테 인 레 스	
	주 발	
2544	사 기 주 발	
2545	접 시	
2546	퀵	
2547	커 피 셸	
2548	주 전 자	
2549	수 처	
2551	바 켓	
2552	푸 라 이 팬	
2553	식 칼	
2554	항 아 리	
2555	프 라 스 틱 기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2556	기 타 집 기	도시락, 가위, 호스, 연탄용집게, 이밖의 부엌 용품 및 잡용품
2600	기 타 주거비	위에 분류되지 않은 주거비
3000	광 열 비	
3100	전 기 료	
3200	연 료 비	
3211	연 탄	
3212	숯	
3213	깨 스	
3214	유 류	
3215	기 타 연 료	석탄, 코크스, 조개탄, 장작, 톱밥 등
3300	기 타 광 열	
3311	성 냥	
3312	양 초	
3313	기 타	이상에서 분류되지 않은 광열비 일체
4000	피 복 비	
4100	의 복	
4111	신 사 부	
4112	숙 너 부	
4113	코 트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4114	오 바	
4115	한 북	
4116	학 생 북	
4117	아 동 북	
4118	잠 바	
4119	와 이 셔 어츠	
4121	남 방 셔 어츠	
4122	내 의	
4123	런 닝 셔 어츠	
4124	스 웨 터	
4125	브 라 우 스	
4126	스 커 트	
4127	바재(기성복)	
4128	브 라 자	
4129	세 탁 료	
4131	기 타	이상에서 분류되지 않은 외부류 일체
4200	적 물 , 먼 및 사	
4211	광 목	
4212	포 포 린	
4213	용	
4214	나 이 롱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4215	기 타 직 물	위에 분류되지 않은 직물류 일체
4216	솜	
4217	실	
4300	양 말 류	
4311	양 말	
4312	스 타 킹	
4313	버 셴	
4314	기 타 양 말	
4400	신 말 류	
4411	남 자 구 두	
4412	여 자 구 두	
4413	고 무 신	
4414	운 동 화	
4415	비 셴	
4416	비 널 화	
4417	기 타 신 발	
4500	장 천 구	
4511	첸 드 백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4512	반 지	
4513	손 목 시 제	
4514	안 경	
4515	백 타 이	
4516	장 갑	
4517	마 투 라	
4518	모 자	
4519	기 타 장 신 구	솔, 허리띠, 스카프, 지갑 등 위에 분류되지 않은 장신구 일체
4600	기 타 피 부	
4611	이 불	
4612	모 포	
4613	가 방	
4614	수 전	
4615	우 산	
4616	양 산	
4617	재 봉 료	
4618	기 타	솜재생산, 상기서비스료의 피부서비스료 등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피부비 일체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5000	잡 비	
5100	의 료	
5111	감 기 약	
5112	소 화 계	
5113	영 양 계	
5114	항 생 제	
5115	한 약	진료비 포함
5116	구 충 계	
5117	의 상 약	
5118	기 타 의약품	안과용제, 탈지면 등
5119	진 료 대	진찰료, 왕길료, 주사료, 투약료, 수술료등
5121	입 원 료	입원화자의 진료비 일체
5122	분 만 료	
5123	X-선 촬영료	
5124	기 타 의료	위에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일체
5200	미 용 위 생	
5211	화 장 비 누	
5212	화 장 크 림	
5213	화 장 분	
5214	화 장 수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살 명
5215	치 약	
5216	칫 솔	
5217	세 탁 비누	
5218	포 마 드	
5219	살 충 제	
5221	면 도 용 기	
5222	화 장 지	
5223	기 타 미 용 위 생 용 품	
5224	이 용 료	
5225	미 용 료	과마료, 고대료 포함
5226	목 욕 료	
5227	구 두 닦 기	
5228	청 소 료	오물 및 분뇨수거비 (동회에 납부하는 오물세 포함)
5229	기 타 미 용 귀 생	
5310	문 방 구	
5311	만 년 필	
5312	연 필	
5313	불 펜	
5314	노 트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5315	필 기 용 지	
5316	도 화 지	
5317	그 림 물 감	
5318	기 타 문 방 구	위에 분류되지 않은 학용품 및 사무용품일체
5400	교 육 비	
5411	유 치 원	
5412	국 민 학 교	
5413	중 학 교	
5414	고 등 학 교	
5415	대 학 교	
5416	교 과 서 대	
5417	학 원 비	
5418	기 타	참고서대, 가정교사로, 도서 관비등
5500	교 양 오 략	
5511	신 문	
5512	주 간 지	
5513	월 간 지	
5514	도 서	
5515	극 장 입 장 료	
5516	스 포 츠 관 략 료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5517	T V 시청료	
5518	카 메 라	구입비에 한함
5519	필 림	
5521	사 전	현상, 인화, 확대 포함
5522	배 코 드	
5523	운 동 기 구	
5524	완 구	
5525	생 화	
5526	기 타 교양오락	위에 분류되지 않은 교양오락비
5600	교 통 통 신	
5611	항 공 료	
5612	빠 스 료	고속빠스로 포함
5613	택 시 료	
5614	기 차 료	지하철 포함
5615	선 락 료	
5616	기 타 교 통 비	
5617	전 화 료	
5618	전 신 료	
5619	우 편 료	엽서료, 소포료, 편지료 포함
5621	기 타 통 신 료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5700	담 배	
5800	기 타 잡 비	
5811	증 여 금	교회, 사찰, 적인 등에 지출 증여되는 금액 단, 타카구에로 이전되는 금액은 제외되어 야 한다.
5812	식 모 임	
5813	수 수 료	
5814	손 해 보 험 료	
5815	기 타	
6000	비 소 비 지 출	
6100	조 세	근로소득세, 가목세, 상속세 등의 조세와 야경 비, 적십자회비, 동창회비 등의 공과금을 조사 기입, 단, 사업상의 이유로 지출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6200	이 자	가계를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6300	기 타	벌금, 과료, 변상금, 도난, 분실금품등과 기여 금, 사회보장분담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기 타 수 지	
	기 타 수 입	소득 이외의 수입으로서 재산상대에는 실질 상의 증가 없이 재산의 형태가 변함으로서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7100)	자 산 의 감 소	이루워지는 수입을 말한다. 저예금 인출을 비롯한 재산 및 유가 증권을 매각 또는 처리학으로서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이난에 포 합한다.
7110	저 금 인 출	「저금에서 찾은 금액」을 말하며 금융 기관 우체국등에 예금한 금액중에서 조사기간동안에 찾아 쓴 금액이 여기 에 포함한다.
7120	보 험 인 출	조사기간중 생명보험을 탔을 경우 조 사 기입 한다. 단, 손재보험(화재보험, 물보험) 등에서 받은 금액은 이난에서 제외된다.
7130	유 가 증 권 매 각	
7140	갯 돈 탄 금 액	
7150	부 동 산 매 각 대 금	
7160	빌 려 준 돈 받 은 금 액	
7170	기 타	토지, 가옥을 제외한 기타 재산을 판 금액으로 순수한 축적 목적이나 계속 적인 사업이 아닌 일시적 이익을 목 적으로 구입 저장하였던 보석, 양곡,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7200)	부 채 의 증 가	<p>기자재 등의 매각 금액을 조사하여 향우회비 라든가 공제금을 받았을 경우도 이난계서 파악한다. 또한 사내 예금을 탄 금액도 포함한다.</p> <p>조사기간중 금융기관이나 사설단체 및 개인에게 돈을 빌렸을 경우와 일부 및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조사기간 말까지 갚지 못하였을 경우에 그 금액을 이난에 기입한다. 그리고 세를 주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도 이난에 포함한다.</p>
7210	빌 려 돈	
7220	일부및외상값	<p>조사기간중에 일부 및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조사기간 말까지 완불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기입한다.</p>
(8100)	기 타 지 출 자 산 의 증 가	<p>적예금을 비롯한 유가증권 매입 또는 부동산 구입액이 이난에 포함된다.</p>
8110	저 금 불 입	
8120	보 험 불 입	
8130	유 가 증 권 구 입	
8140	젯 돈 부 은 금 액	
8150	부 동 산 구 입	
8160	빌 려 준 돈	<p>개인 및 사설단체에 빌려준 돈을 조사기입</p>

부 호	항 목 별	내 용 설 명
8170	기 타	<p>한다. 또 전세를 얻었을 경우 전세금으로 준돈도 이난에 해당된다.</p> <p>토지, 가옥 이외의 재산을 산 금액이 이에 해당된다.</p> <p>즉, 장신구류중 고가의 보석을 순수한 축재 의 목적으로 구입한것과 계속적인 사업(비 법인)과는 관계없이 일시적인 수익을 목적 으로 기계나 물품을 구입한것이 이에 포함 한다.</p>
(8200)	부 채 의 감 소	<p>사업상의 목적이 아닌것으로 금융기관, 사설 단체 및 개인에게 빌린돈을 갚았을 경우 또는 월부 및 외상값을 갚았을 경우 이난 에 포함된다.</p>
8210	빌 린 돈 갚 은 금 액	
8220	월 부 및 외 상 값 갚 은 금 액	
9100	전 기 예 월 금	
9200	기 말 현 금 잔 고	
9999	현 물 (자 가 생 산 물 총 액)	

부록 II. 직업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 (소분류)
전문적· 기술적 직업 종사 자	건축기사· 추량기사 및 기술자	근 (봉)	건축기사 추량기사 토목기사 전기 및 전기통신기술자 기계기술자 제철기술자 화학야금기술자 농림기술자 수산기술자 요업기술자 식품기술자 방직기술자 라에 분류되지 않은 건축 기 사, 추량기사 및 기술자
	자연과학자	근 (봉)	화학자 물리학자 생물학자 농림학자 수산학자 라에 분류되지 않은 자연 과학자
	의사	근 (봉)	의사 치과의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단. 개인 의사의 경우 는(의)가구	수외사 한외사
	간호원 및 조산원	근(봉) 의	간호원 조산원
	기타의 전문 적 의료 종 사자 및 의료기술자	근(봉) 단. 자기의 전문기술로 개업 하고 있을 때에는 (의)가구	약사 의료기술자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문적 의료종사자 및 의료기술자
	교원	근 (봉)	대학교교원 중·고등학교교원 국민학교교원 유치원교원 타에 분류되지 않은 학교 교원
	종교성직자· 사법관계 종사자	의 근(봉) 단. 변호사는 (의)가구	종교성직자 사법관계종사자
	예술가·저작	의	화가 및 조각가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사무종사자	회사관리직 직업종사자		
	사무종사자	근(봉)	회계 및 현금출납원 일반사무원 수금인 우체사무종사원 속기사 및 타자원
	기타회사 무종사자	근(봉)	사무용 기계조종사 타에 분류되지 않은 사무
판매종사자	상품판매 종사자	의 단, 판매원, 점원 및 상 업의무원은 근(노)	도매업 경영주 소매업 경영주 음식점주 판매원 및 점원 행상인 및 노점상인 상업의무원(보험을 제외) 타에 분리되지 않은 상품 판매종사자
	의무원·부동 산중개인 및 유가증권의 매매인	의 단, 보험의무 원은 근 (봉)	정액 봉급이 없이 수수료를 받는 일체의 의무원 또는 중개인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 용 예 시 (소분류)
기타의 판매종사자 교통체신 업종사자	철도기관사 및 화부	근 (노)	기타의 판매종사자 철도기관사 화부
	자 동 차 운 전 사	근 (노)	전차운전사 버스운전사 승용자동차운전사 화물자동차운전사 타에 분류되지 않은 자동차 운전사
	선박, 항공 기 운전조 종사	근 (봉)	선장, 갑판장 및 항해사, 선박기관사, 조종사, 항공사 및 항공기관사
	전과교원원 및 전보 통 신원	근 (봉)	전과교원원 전보통신원 집배원 송달부
	기타의 교 통 및 체신 업 종사자	근 (노)	갑판부원, 기관원 및 선원, 기차차장 및 점사원, 기타 차량의, 차장, 교통정비원, 배 차원 및 발신호원, 통신점사 원 및 정리원, 우마차부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 용 예 시 (소분류)
			타에 분류되지 않은 교통 제산업 종사자
기능공, 생산공정 종사자 및 기타 단 순노무자	방직공, 직 조공, 편물 공, 염색공 및 유사직 공	근 (노)	섬유준비공 방직공 및 편사공, 직조공, 방직기설치수리공 및 방직기 준비공 편물공 및 편물기설치수리공, 직물조물판 제작공, 직물표백 공, 염색공 및 완성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직물 및 유 사제품제조공
	제봉사, 제 단사, 모피제 품제조공 및 유사직공	근 (노)	양복제봉사 한복제봉사 모피, 피혁, 의류, 제봉사 및 유사직공 모자제조공
	피혁제품제 조공 (장갑 및 의류제품 제외)	근 (노)	직물, 피혁의류, 장갑의 지형 공 및 재단사, 직물, 모피물, 피혁의류 및 장갑의 자수공 직물가구공 및 유사직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의류 및 유사제품 제조공 제화공 화류수선공 가죽백제조공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 용 예 시 (소분류)
	금속재료 계 조공	근 (노)	용광로공 (금속제품) 비철금속제련공 주물공 하조공 금속열처리공 압연공 선선공 타해 분류되지 않은 금속 재료제조공
	정밀기계제 조공, 시계제 조공, 보석공 및 유사직공	근 (노)	정밀기계제조공 및 수리공 시계제조공 및 수리공 보석공, 금세공 및 은세공 보석류조각공 기계완성공, 공구제조공 및 기계공구정비공
기능공, 생산공정 종사자 및 기타 단 순노무자	금속기계제품 제조공 및 유사직공	근 (노)	기계공구제작공 조립공 및 기계설치공 (전기 및 정밀기계조립공 제외) 기계수리공 (전기 및 정밀기 계수리공 제외) 금속박판공 연판공 및 관류결합공, 용접 공, 철판공 및 철근공, 도금 공 및 유사직공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대시(소분류)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 제품제조공
	전기공, 전력 및 전자력 이용공	근 (노)	전기공, 전기수리공 및 유사 직공, 전기 및 전자기구공, 라디오, 텔레비전설비공 및 수리공, 통신전화기시설공 및 수리공, 전선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기 전자 및 유사직공
	목공, 가구공 및 기타 목· 축제품 제조 공	근 (노)	목 공 가구공 세제공, 제재기설치공, 축제품 제조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목· 축제품 제조공
기능공, 생산공정 종사자 및 기 타 단순노무자	도장공 및 표구공 토목(미장이) 및 기타 건 축종사자	근 (노) 근 (노)	건축도장공 표구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도장공 도공(미장이) 연의적공, 개와공 및 타일공 시멘트 완성공 및 해타조공 결연취급공 취리삽입공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 용 예 시 (소분류)
			타에 분류되지 않은 건축관계 직공
	인쇄공, 계본공 및 유사직공	근 (노)	식자공, 인쇄공, 계판공, 동사공, 계본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인쇄계본 관계직공
	도기공, 노공, 유리 및 절토성형공 및 유사직공	근 (노)	유리성형공, 절단공, 연마공 및 완성공 도기공, 절토성형공 유리 및 도기노공 유리 및 도기장식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유리 및 절입관계직공 도절공 및 계본공
기능공, 생산공정 종사자 및 기타 단순노무자	음식료품 가공 및 제조공	근 (노)	제빵공 및 제과공 제당 및 정당공 주류제조공 및 유사직공 거장공, 냉동공 및 통조림 제조공 및 정육공 낙농품 제조공 원장, 간장 및 기타 조미료 제조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음식료품 가공공 및 제조공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 용 예 시 (소분류)
	화학 및 화학공정 종사자	근 (노)	단식 및 연식증유 부관리부 화학제품 가열공 화학제품 원료분쇄가공공, 팔프공 및 제지공, 화학제품 제조공 동식물 유지공, 경화유공 및 비누제조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화학 및 화학공정 종사자
	연초가공공 및 연초제품 제조공	근 (노)	연초 가공공, 연초제품 제조 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연초제 품 제조공 제용공 및 유사제용, 타이아 제조공 및 고무제품 제조공 화선공 및 유사제용
	기타기능공 및 생산품 제조공	근 (노)	제혁가공공, 모피공 및 유사 제용, 사진압실 종사자 약가 제조공 및 유사제용, 조각공 및 석공 지류제품 제조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기능공 및 생산제품제조공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유역시(소분류)
	포장공, 하역 작업자 및 유 사직업종사자	근(노)	포장공 및 유사직공 하역작업자 및 유사직업 종사자
	고정기관 굴 착기, 기중기 운전공 및 유사직업 종 사자	근(노)	고정기관 및 유사장치운전공 및 기관화부 기중기 운전공 화차설치공 및 철선공 진설중기 운전공 소온반기제운전공(물뭍처리) 주유부(고정기관, 자동차 및 기타시설)
	기타의 단순 노무자	근(노)	도로 보수공 보선공 타에 분류되지 않은 단순 노무자
서비스직 업종사자	보안서비스 종사자	근(봉) 단. 수위. 감시원은 근 (노)	소방관 및 유사직업 종사자 경찰관 해양경비원
	가사서비스 종사자	근(노)	수위 및 감시원 타에 분류되지 않은 보안 서비스종사자 가사부

대분류	중분류	가구구분	내용예시(소분류)
			타에 분류되지 않은 가정 사용인
	기타 서비스 종사자	근(노) 단, 체육가, 운동가 및 유사직업종사 자는 (의)	요리인(개인가정 제외) 여관, 하숙 및 기숙사의 종사자, 배달부, 접대부 및 사환(개 인가정 제외) 이발사 및 미용사 목욕탕 종사자 구두탁이 사진사 및 영상기사 세탁직 청소부 및 유사직업종사자 체육가, 운동가 및 유사직업 종사자 안내인 강의사 및 화강장종사자 접객부 및 기생 타에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 종사자
	군인	군(병)	육군사병 육군장교 해군사병 해군장교 공군사병

대 분류	중 분류	가 구 구 분	내 용 예 시 (소분류)
분류불능의 직업	새로이 직업을 구하는 자 (무직)	와	공군장교 해병대사병 해병대장교 새로이 직업을 구하는 자 (무직)